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액사건 및 심리불속행 사건 판결서 공개〉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65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6
가. 판결서 열람·복사 신청의 의의	6
나.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의견	7
3. 관계기관 의견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4. 6. 24.
3. 회 부 일 : 2024.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건은 판결서 열람 및 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약 30%의 소송 판결서만 공개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소액사건심판법」은 그동안 소액사건의 절차적 신속성을 위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으나, 2023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심리불속행 사건의 경우에도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소송 당사자들이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판결서를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 제162조¹⁾는 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하 “소송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소송관계인이 아닌 자는 당해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으로, 같은 법 제163조의2²⁾는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소액사건(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

1)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2)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⑥ 생략

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³⁾의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사건(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사건)⁴⁾의 판결서는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개정안은 소액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여,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소송관계인이 아닌 자도 해당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⁵⁾

3) 「민사소송법」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5) 개정안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하는 부분의 경우, 이해민위원이 대표발의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현행	개정안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판결서와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판결서 열람·복사 신청의 의의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국민이 공개된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소송기록 중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⁶⁾는 자유로운 의사⁷⁾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⁷⁾

6)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헌재 90헌마133]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을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

이러한 알 권리의 자유권적 성질에 비추어 소송관계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해당 판결서의 내용에 대한 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일반 국민의 판결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권을 보장하고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⁸⁾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있어 왔음.⁹⁾

나.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의견

2023년 3월부터 개정된 「소액사건심판법」이 시행되어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등 특정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¹⁰⁾ 이는 과거 「민사소송법」이 판사가 소액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판결의 이유를 기

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도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8)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에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음(2025. 7. 12. 시행)

9)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11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를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를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음.

10)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원심 패소의 이유를 알지 못해 항소심 진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받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이와 같은 입법으로 소액사건의 당사자는 원심에서 패소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하게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소송당사자의 알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르면 소송관계인이 아닌 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없어 재판장이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였더라도 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없음. 소송관계인이 아닌 자가 해당 판결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당해 소송관계인의 동의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신청하여야 함. 즉,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판결서에 대한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가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¹¹⁾은 심리불속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 사건의 경우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867호)은 심리불속행 사건의 경우에도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¹²⁾

해당 개정안에 따라 판사가 심리불속행 사건에서 판단 요지를 판결 이유에 기재하게 된다면 소액사건의 판결서 공개와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개정안과 같이 소송관계인이 아닌 자도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1심 민사본안사건 중 매년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심리불속행 사건 또한 상고심 민사본안사건 중 평균 5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실명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³⁾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③ 생략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867호)

현행	개정안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에 따른 판결에는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심 민사본안사건 중 소액사건의 비중>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심 본안 전체(건)	926,408	814,664	744,123
1심 소액사건(건)	655,827	558,854	492,576
소액사건 비중(%)	70.7	68.5	66.1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재구성

<상고심 민사본안사건 중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된 사건의 비중>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처리건수	13,712	19,161	23,924	14,588
심리불속행기각(건)	7,841	8,631	8,326	8,727
심리불속행 사건 비중(%)	57.1	45.0	34.8	59.8

자료: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는 2023년 1월 1일부터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됨¹⁴⁾에 따라 판결서의 비실명화 처리¹⁵⁾를 위한

13)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14)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포함, 이하 같음) 판결서만 공개 대상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개정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민사 미확정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편입됨

15)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4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성명, 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한다.

1.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을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비실명화 작업 완료에 평균 35일이 소요되었으나, 2023년에는 약 65일¹⁶⁾이 소요되었으며, 그 기간은 판결서 공개 범위의 확대로 인한 작업 물량 적체로 인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위와 같이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법원에 업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법원이 개정안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지(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포함한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②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
 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 제5조 (비실명 처리의 방식) ① 비실명 처리 대상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다.
- ② 판결서 등의 당사자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대표자 주소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 ③ 증거목록을 포함한 판결서 등이 PDF 파일 등일 경우, ■■■■ 등을 사용하여 가리는 등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 16)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에 비실명화 완료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비실명화 작업이 완료되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65일이 소요됨(판결서 데이터가 판결선고 후 시스템에 전송되기까지도 평균 2~3일이 소요됨).

3.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판결서를 열람·복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열람·복사를 할 실익이 거의 없는 판결서라는 점에서 열람·복사 대상의 확대에 의한 효용이 현저히 적은¹⁷⁾¹⁸⁾ 반면에 과도한 비용과 인력,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하여 정작 신속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는 다른 판결서 공개가 심각하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1

17)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대부분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없이 쟁점에 대한 판단의 핵심 논거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어,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인 국민이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867호)은 상고심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위 개정안을 전제로 하는 이 개정안 조항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867호)」이 의결되어 시행되더라도, 위 개정안의 문언,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상고심 판결의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 이유를 기재할 수 있는 사건은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이유를 기재하는 사건도 상당히 간이하게 이유를 기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판결서의 열람·복사 필요성이 적을 수밖에 없음.